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1)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집하장,선별장) : 대가면 옥성리 356번지
 2) 성주군농산물산지공판장(공판장) : 대가면 옥성리 349번지 일원
 3)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판매장) : 성주읍 성산리 170-21번지 일원
나. 운영방법(안 제4조) : 위탁운영
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안 제7조, 제8조)
 1) 구성 : 15인이내(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 선출,
 간사 : 유통담당)
 2) 임무 : 위탁운영자 선정 등에 따른 사전심의 및 운영이사회 참여,
 사용료부과 관련사항의 심의 등
라. 사용료 등(안 제13조) :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이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제정조례안 : 붙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마. 합의사항 :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부과징수 관련 재산관리담당 합의
바. 입법예고 결과
 1) 의견제출자 :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2)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여부 : 반영-1건, 미반영-2건

- 조례안 제7조제2항3호의 내용중 “농산물생산자단체대표”를 “지역농협장”으로 변경요청 ⇒ **반영**
- 조례안 제8조4호의 내용중 “경영지도” 삭제요청 ⇒ **미반영**
- 조례안 제18조3호의 내용중 “지도감독”을 “지도”로 변경요청 ⇒ **미반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공판장, 전시판매장 (이하 “유통 센터 등”이라 칭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유통센터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집하장, 선별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6번지에 둔다.
2. 농산물공판장의 명칭은 성주군농산물산지공판장 (이하“공판장”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49번지 일원에 둔다.
3. 농산물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판매장” 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70-21번지 일원에 두며 필요한 경우 성주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서울 등 대도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유통센터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정보의 수집
4. 기타 유통센터 등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방법) 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설치·변경) 군수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 (구성) ①유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 : 군의원, 농협중앙회성주군지부장, 지역농협장, 성주군농정심의위원, 농산물유통분야전문가 등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담당으로 한다.

제8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의 사전심의
3. 기타 유통센터 등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결정
4. 위탁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11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등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①유통센터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단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한 손실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성주농산물의 명성유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원상복구) ①수탁자는 유통센터 등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업무규정 작성 비치 등)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 등의 운영 실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등의 시설관리
2. 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등의 운영상황 조사 및 지도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주군농산물산지(　　·　　·　　) 사용신청서

단체(　　)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기타 :　　천원
사용신청 시설내역	부지 :　　㎡　　:　　㎡　　:		
비　　고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　　)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　)

구비서류 : 1.　　1 .
2.　　(　　) 1 .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농산물산지 (　　·　　·　　) 사용허가서

<table>
<tr><td rowspan="3">법인·단체</td><td>명　　칭</td><td colspan="3"></td><td>법 인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7">성주군　　읍·면·동　　리　　번지</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재산의표시</td><td>시 설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부　　지</td><td colspan="2">소 재 지</td><td>지　번</td><td colspan="2">지　목</td><td colspan="2">지　적(m²)</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건　　물</td><td colspan="2">구　　조</td><td>면적(m²)</td><td colspan="4">용　　도</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기계장비</td><td>구　분</td><td>단　위</td><td>수　량</td><td>구　분</td><td>단　위</td><td colspan="2">수　량</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8"></td></tr>
<tr><td>허가기간</td><td colspan="8"></td></tr>
<tr><td>기　　타</td><td colspan="8"></td></tr>
</table>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　　2 ᅡ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ᄋ